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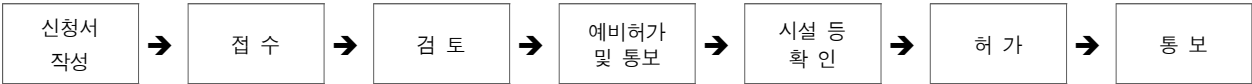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처리절차



신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